

2021 - 42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00호(2018.4.5.)로 결정·고시된 정비창전면 제1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해제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 장

1. 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가. 해제기간 연장구역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정비창전면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용산구 한강로3가 40-641 일대	71,90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00호 (2018. 04. 05)

나. 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사업시행인가 신청기한 조합설립인가 신청기한
기정	정비창전면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용산구 한강로3가 40-641 일대	71,901.0	2020. 11. 20
변경 (연장)	정비창전면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용산구 한강로3가 40-641 일대	71,901.0	2022. 11. 20

2. 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3.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시 도시활성화과(02-2133-4635), 용산구 도시계획과(02-2199-7403)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2021 - 94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청문)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 장

1. 공고기간 : 2021. 1. 14. ~ 2021. 1. 28.(14일간)
2. 처분사전통지 사항

업체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청문 실시		법적 근거
					일시 및 장소	주재자	
부띠크성지 종합건설㈜ (김효빈)	건축공사업 01-435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397, 1404호 (서초동, 부띠크모나코)	영업정지 후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 보완 (보증기능금액)	등록말소	2021.2.8. (월)10:00	주무관 김문수	법 제83조제3 호의2

3.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 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전화 02-2133-81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